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행정청이 공익 실현을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의무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국가가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의 권한으로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을 행하는 행정을 행정강제라 한다. 행정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를 엄격히 요구하며, 크게 의무자의 '사전 의무 불이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발동하는 행정강제집행과,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는 행정상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행정강제집행은 불이행된 의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수단이 대입된다. 불이행된 의무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대체적 작위의무일 경우, 행정청은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행정대집행을 활용한다. 반면 가옥 인도처립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거나 금지 명령인 부작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물리적 대행이 불가능하다. 이때 행정청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하여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만약 이러한 수단들로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에는 최후의 보루로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직접강제가 동원된다.

이와 달리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전 의무의 존재나 그 불이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이나 화재 등 눈앞의 위급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할 때, 행정청은 사전 명령 없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한다. 즉시강제는 급박성을 근거로 사전 절차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지만, 그만큼 오·남용의 우려가 커 법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받는다. 즉, 행정강제 체계는 사안의 급박성과 의무 성격에 따라 발동 요건을 엄밀히 이원화하고 있다.

(나)

법치국가에서 행정강제는 공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행정청의 자의적인 실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사법적 수단 역시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다. 국민은 위법한 행정강제 조치에 대해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취소소송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은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건축주가 행정청의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행정청이 철거를 그대로 진행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소송 도중 건물이 완전히 철거된다면 후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원상 복구할 수 없게 되며,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거부하는 각하 판결을 내린다. 사법부는 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소소송

과 결합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집행의 완료 여부에 따라 논리적 구조가 상이하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인 '소의 이익'이 깨지게 된다. 반면,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행강제금처럼 과거의 부과 처분 자체가 독립된 행정행위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소의 이익이 충족되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권리 구제 체계는 조치의 시간적 흐름과 성격에 따라 소송의 수용 여부를 엄격히 통제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단적 유효성을 중심으로 재판의 성립 요건을 판단한다.

4. (가)와 (나)의 설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행정 조치의 법적 요건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위법한 행정 조치에 대한 사법적 구제 수단의 특징과 한계를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고, (나)는 그 제도가 지닌 사회적 폐단에 대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 ③ (가)는 사법 제도의 성립 배경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명하고 있고, (나)는 행정청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부의 통제 방식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가)는 행정강제의 긍정적 기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고, (나)는 사법 구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학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핵심 개념의 사전적 정의를 나열한 후, 상반된 성격을 지닌 두 하설의 대립 과정을 논리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5. (가) 지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의 권한으로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행정강제는 엄격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 ② 행정강제집행에 속하는 모든 행정 작용은 의무자의 사전 의무 불이행을 공통된 요건으로 삼는다.
- ③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제3자가 대행하는 방식의 대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행정상 즉시강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명령 절차를 생략하므로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된다.
- 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자에게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물리적 대행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6. 밑글의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빈칸 [ A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청은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자에게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발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청은 대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우선 '불법 영업을 중단하고 철거하라'는 새로운 작위의무 명령을 부과해야만 하며, [ A ]

- ①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해야만 (나)의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깨져 사법적 구제 수단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 ② 금지 명령인 부작위의무는 그 속성상 타인의 물리적 대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전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 ③ 이 새로운 명령을 위반해야만 비로소 대집행의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상태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 ④ 사전 명령을 생략하는 조치는 (가)의 즉시강제에만 해당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⑤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에서는 오직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의무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7. (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정대집행은 사법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자력집행력을 지니므로, (나)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집행부치지 원칙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행정청이 물리적 실행에 착수할 법적 정당성이 부정된다.
- ② 행정대집행은 타인의 대행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금지 명령인 부작위의무의 경우 물리적 대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위반 상태의 해소를 위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③ 행정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해 실현되는 종국적인 이행 상태는, 의무자가 직접 행위를 수행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법적·물리적 상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④ 행정대집행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 상태가 지속된다면, 행정청은 이행 추구를 위한 금전적 처분과 제3자에 의한 대행 처분을 동일한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 동시에 중첩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⑤ 행정대집행의 비용 징수 절차는 의무자가 금전적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물리적 철거 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비용 부과 처분이 선행되어야 집행의 효력이 유지된다.

8. <보기>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응하여 국민이 제기한 소송 연구 사례이다. 밑글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국민 두 명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사법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례 [A]** :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물리적인 철거 집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축주가 철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사례 [B]** :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어 공무원들에 의해 건물이 이미 흔적도 없이 완전히 철거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주가 철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단, 두 사례의 건축주는 소송 제기 과정에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청이나 법원에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 ① [A]의 건축주는 소송 진행 중에도 행정청의 집행 속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판결 전에 철거 행위가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 외에 별도의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을 밟아야 한다.
- ② [B]의 건축주는 이미 처분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어 법원으로부터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받지 못하고 소송을 거부당하는 법적 구조에 직면하게 된다.
- ③ [A]와 달리 [B]는 이미 행정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사법 구제 체계가 통제하는 재판 성립 요건인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정당성을 지닌다.
- ④ [B]와 달리 [A]는 아직 행정강제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시점의 소송이므로, 건축주가 일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법부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 ⑤ [A]와 [B] 모두 건축주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두 사례의 행정대집행 처분이 지닌 법적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9.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우리 팀은 라이벌 팀과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을 다툼다.
- ② 재판에서 양측이 계약서 조항의 효력 유무를 다투고 있다.
- ③ 인명 구조 작업은 일본일조를 다투는 매우 급박한 일이다.
- ④ 사소한 오해로 인해 친구와 길거리에서 크게 다투었다.
- ⑤ 동생들은 서로 먼저 과자를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다투었다.